

한국주택금융공사 특정직(운전업무)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특정직(운전업무) 1명

구분	모집분야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직군 등	운영부점		
특정직 (무기계약직)	지원직 (운전업무)	부산 본사	1명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 등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입사 후 인사이동 등에 따라 차량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변경 가능

☐ 운영부점 상세주소 (공고일 기준)

구분	운영부점	주 소
특정직 (운전업무)	부산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에정자는 응시·입사 불가)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운전직 근무경력 2년 이상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제외)

②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③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 자

[운전직 근무경력 관련 용어 정의]

- ▶ 운전직 근무경력이라 함은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을 의미
- ▶ 운전직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운전 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근무기간 또는 담당업무 미기재 포함)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담당업무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

□ 근무 예정지(부산)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채용조건

□ (고용형태) 특정직(무기계약직)*

- 공사 「사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특정직은 만 60세가 도달한 달이 속한 분기의 말일자를 기준으로 정년퇴직

* 약 3개월 간 수습기간 부여 후 근무평가를 통해 수습해제여부 결정

□ (근무시간) 09:00 ~ 18:00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

* 시간외 근무 시 보상휴가 지급

□ (근무장소) 부산 본사 인근 (업무 등의 사유로 전국지역 출장 운행 가능)

*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본사 또는 전국 지사에 근무 가능

- **(보수수준)** 면접 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력*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결정**

* 「인사규정」 “별표1.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경력인정범위(동종, 유사, 상이직무)를 판단하며 상이직무 경력에 대하여는 기본연봉 산정 시 경력으로 미인정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지원서의 운전직 근무 경력사항에 기재(단,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담당업무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발급 기관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경력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 '24년 기준 기본연봉을 포함한 예상 총 연봉은 세전 41백만원 ~ 43백만원 수준 (성과연봉 등 포함, 재직 중 성과평가 B등급 등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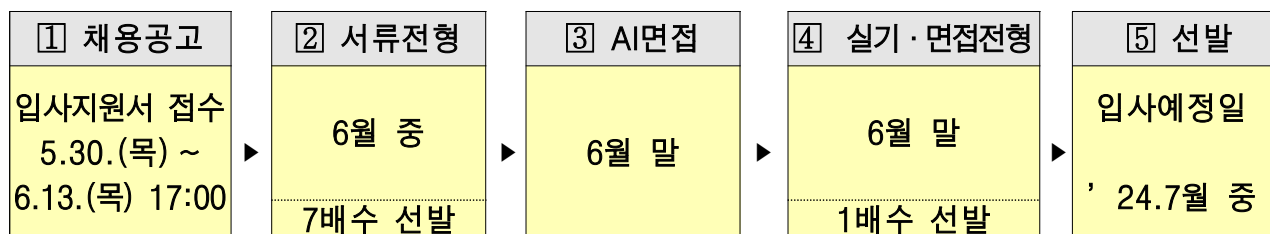
- **(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 공사 「사무직원 운영규정」 등 공사 내규에 따름

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5.30(목) ~ 6.13(목) 17:00
- **마감시간(6.13.(목) 17: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hf.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등 불가)

5.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 절차



주)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형 일정**(전형절차별 일정, 장소는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 입사지원서 접수	5.30.(목) ~ 6.13.(목) 17:00
■ 서류전형 평가	6월 중
■ AI면접(온라인)	6월 말
■ 실기 · 면접전형	6월 말, 부산 에서 진행 예정
■ 입사에정일	'24년 7월 중

6. 우대사항 [각 전형별 가점 부여]

- ※ 가점 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는 보훈대상자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참조)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 전형별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대 가점 부여하며, 우대사항 대상자 여부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본 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 대상자는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구 분	가 점	세부가점대상	관련법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중증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배려 대상자	각각 만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 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²⁾	「아동복지법」

1)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의 자녀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또는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보호 종료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2019.6.13.이후(당일 포함)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이후 전형단계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 서류 참조

7. 제출서류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 시(단순 오타,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증빙서류 또는 추가정보 미제출 시(우대대상이 아님에도 우대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포함) ☞ 증빙 불가 또는 이후 전형단계 응시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이후 전형단계 응시 불가)**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3일 이내 ☞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요령 등 사전 숙지 요망
- ※ 제출한 증빙서류 및 추가정보는 우대사항 확인, 면접위원 제척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회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실 것)
- ※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후(24.6.13(목)), 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및 추가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미제출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불가

① 지원자격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6.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조회 기간을 “**전체경력**” 으로 하여 발급
- 운전직무 경력증명서(**직인 필수**)* 등 1부

- * 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운전 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아닌 단순 내부 출력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세부 구분별로 아래 증빙 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마감일 당일 포함)

구 분	세부 구분	증빙 서류
장애인	장애인(중증 포함)	①장애인증명서 1부, ②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 증명서 1부(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 이민자) 1부
	보호대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1부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③ (추가정보 입력)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근무경력, 정부「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기타 필요 서류)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지원자격 미충족자인 경우 합격 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 기타 상세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항 참고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선발

* 불성실 기재자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①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②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③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경쟁률 7배수 초과 :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경쟁률 7배수 이하 :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는 제외)

□ 온라인 AI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시 심층검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기간 내 온라인 AI면접 미응시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불가

□ 실기·면접전형

-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의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하되, 각 전형별 부적격자는 가점 및 (예비)합격자 대상에서 제외

전형 구분	내용	배점	주요 검증역량
실기전형 (도로주행)	차량을 이용한 주행 심사	60	운행계획 수립 및 운전 수행능력의 적정성 등
면접전형 (심층면접)	인성, 성품, 가치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응답	40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 인성 등

-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9. 기타사항

-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recruitlab.co.kr>)
-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 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전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성적순으로 선발

* 전형별 세부기준 (세부기준 상 ‘점수’ 는 득점 및 가점 합산 점수를 의미함)

동점자 발생	세 부 기 준
실기·면접전형	- 실기전형 점수 > 면접전형 점수 > 서류전형 점수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 순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 항목 득점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점은 최대 만점의 10%까지만 적용

-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 실시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제출한 추가정보 포함)는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매 전형 참여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①기간만료 전 여권,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증, ④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⑤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금지자 및 합격 취소 관련 내규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전형

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직무능력 기술서	직무능력	-지원분야 관련 지식, 경험, 경력이 있는가 -보유 경력은 공사 업무에 활용하기 적합한가
직무적성 기술서	직무수행태도 및 업무수행 계획	-지원자의 직무수행태도가 공사 인재상에 적합한가 -업무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가
	지원 사유	-힘들었던 경험과 입사 후 바라는 근무환경이 구체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힘들었던 경험과 입사 후 바라는 근무환경이 타당한가
	직업윤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적합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가 -공익지향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는가

□ 실기전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운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운행일정 협의 과정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숙지 상태 -교통통제, 교통량 등 도로상황을 고려한 최적 운행경로 도출 및 공유 -목적지 예상소요 시간 산출 및 목표시간 내 도착을 위한 출발시간 지정의 적정성 -하차위치에 대한 사전 탐색 여부 -운행계획 수립 관련 온라인 정보 활용도
운전 수행능력의 적정성	-운행 중 급정거, 급가속 금지 등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 여부 및 운전스킬 -목적지 운행경로 숙지 수준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운행 중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하차 후 이동동선을 고려한 하차지점의 적정성
운행업무 관련 부수업무 수행의 적정성	-탑승자에 대한 운전의전 숙지 및 수행 태도 -차량 외·내부 환경 점검 및 관리

□ 면접전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직무능력 (직무능력기술서 심층검증)	-지원분야 관련 강점 또는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는가 -보유 경력 등은 공사 업무에 활용하기 적합한가
의사표현력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가 -본인의 의사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
책임감·친화력	-성실성 및 책임감이 있는가 -화합 및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인적성·가치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적합한 인·적성을 지니고 있는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